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‘24.10.22.)됨에 따라,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외 자동차를 규정 (안 제30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)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2. 경찰·소방·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3.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자동차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)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</u> <u>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</u> <u>2. 경찰·소방·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</u> <u>3.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자동차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929